

택시요금 조정 고시

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, 「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금 등 조정요령」 제3조 및 「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」에 따라 예천군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.

2024. 3. 5.

예 천 군 

- ☐ 시 행 일 : 2024년 3월 18일(월) 00:00부터
- ☐ 적용지역 : 예천군 전 지역
- ☐ 조정내역

구 분	현 행	조 정
기본요금(2km까지)	4,000원	현행과 동일
주행요금	131m당 100원	
시간요금 (15km/h이하 주행)	31초당 100원	
심야할증	20% 할증(23:00~04:00)	
시(군)계 외	20% 할증	
호출사용료	1회당 1,000원	
복합할증요금 (2km 초과 시)	□ 복합할증 구간 - 2km초과시 기본요금에 1,000원 합산 - 2km초과 7km이하 : 주행요금 100%할증 - 7km초과 : 주행요금 63%할증	- 2km초과 10km이하 : 주행요금 100%할증 - 10km초과 : 주행요금 63%할증